

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전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	성남시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2003년 7월 16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, 에너지 관련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지원과로 이관되고 관련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협의회 당연직위원 구성 부서명변경(안 제3조) - 지역경제과를 산업지원과로 -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-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- 교통행정과를 교통지도과로 ·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대상 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변경(안 제7조)	산업지원과	경제환경
2	성남시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“의료보호법”이 “의료급여법”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조항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개정된 법령용어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과 각 조항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- 보호를 급여로 -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· 조례상의 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	사회복지과	사회복지

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3	성남시자연취락 지구지정및정비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 관리법을 폐지·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종전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종전의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(안 제1조) · 도시계획법시행령제1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로 변경 (안 제3조)	도 시 과	도시건설
4	성남시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코자 함 □ 주요골자 ·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를 둔다(안 제6조) · 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던 것을 주민지원기금운 용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(안 제5조)	자 원 관 리 과	경제환경

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5	성남시성남문화의집 위탁관리동의안	□ 제안이유 · 지방자치단체 시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3개소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나, 정부의 인력감축계획에 의거 운영인력 공무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· 전문성을 갖추고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민간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위탁시설 - 시설명 : 성남시성남문화의집 - 위 치 :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 - 시설규모: 지상3층(건축연면적 1,696㎡) - 부지면적 : 3,162㎡ · 위탁업무범위(안 제2조) -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- 각종 시설을 비영리 목적으로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 -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강좌 실시 - 미술전시관은 전시를 목적으로 무료로 대여	문화예술과	문화체육